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 쉼터 등 추가〉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00275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1.
- (3) 회 부 일 : 2024. 6.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치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현행	개정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 10. (생략) <u><신설></u> ② ~ ⑬ (생략)	----- ----- ----- ----- -----. ----- ----- ----- -----. 1. -----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 10. (현행과 같음)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 ⑬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이는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근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재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현재 취업제한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인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 쉼터’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시설은 학대피해장애인과 장애아동 등 장애인이 주 이용자로서 잠재적 재학대 위험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장애인들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봄.

- 장애인 쉼터는 학대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
-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임.²⁾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임.³⁾

2)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

시·도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계	19	10	134
서울	2	2	29
인천	1	2	10
경기	2	2	32
강원	1	-	2
대전	1	-	3
세종	1	-	2
충남	1	-	1
충북	1	-	3
대구	1	-	4
경북	1	-	2
부산	1	2	3
울산	1	2	6
경남	1	-	10
광주	1	-	7
전남	1	-	10
전북	1	-	7
제주	1	-	3

주1): 2024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현행법상 취업제한기관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⁴⁾ 현행법상으로도 이 두 시설은 취업이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제한되는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기관 포함 여부가 쉽게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로써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상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는 현행 법률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시설을 이용하는 학대피해 장애인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들을 분리조치할 필요성이 큰 만큼 두 기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의 확대는 국민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법률을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또한 법 시행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이전 「장애인복지법」 부칙의 규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범죄자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하고,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시행일은 6개월이었으며,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도록 적용례를 둔 바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

- 이미 현행 시행령에서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

나. 경기도

□ 학대피해장애인, 장애아동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 등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범죄경력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불필요.

문 의 처
02)6788-5502